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차 중능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21. 5. 27 (목요일), 15:00 ~ 19:3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문식, 김정희, 류광훈, 박경립, 박기련, 성종상,
소현수, 심경미, 우동선, 이 선, 장인철, 정정남,
조선자(혜도), 주신하, 홍보식(이상 15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 심의사항 】

1	서울 의릉 주변 성북구-동대문구 간 단절된 산책로 연결	공개
2	덕수궁 내 미술관 전기실 신설에 따른 터파기 공사	공개
3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4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	공개
5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6	경복궁 내 '2021년 새활용 패션쇼' 장소사용	공개
7	송례문 주변 '제1회 송례문화제' 장소사용	공개
8	창덕궁 내 KBS드라마 「연모」 촬영	공개

【 검토사항 】

9	궁·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안) 검토	공개
---	-----------------------------------	----

【 보고사항 】

10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등 2건	공개
----	-------------------------	----

【 심의사항 】

안건번호 공능 2021-05-001

1. 서울 의릉 주변 성북구-동대문구 간 단절된 산책로 연결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서울 의릉」 주변 성북구-동대문구 간 산책로 연결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의릉 주변에 성북구-동대문구 간 산책로 연결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 '21년 제3차 사적분과 소위원회 보류: 현지조사(공능분과)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의릉(사적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32길 146-20
- (3) 신청내용<산책로 연결>
 -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월곡동 산8-10 일대(문화재구역과 연접)
 - 허용기준 1구역(개별심의)
 - 사업내용
 - 성북구청 산책로 연장(데크계단 및 안전난간 설치, 수목별채 및 식재 등)
- (4) 신청인 의견
 - 현재 성북구-동대문구 간 산책로는 사적지, 군부대 등으로 단절되어져 있고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산책로 간 연결의 필요성을 인지 후 지난 1년 간 산책로 연결에 대해 인접 군부대와의 협의를 진행하였음, 다만 해당 구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기에 원지형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화재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음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21.5.11. / 문화재위원 ○○○. ○○○)
 - 주변 주민들의 산책연결로 확보 측면에서 현재 계획 중인 데크계단 설치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화재인 의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음
 - 다만, 계단설치를 위한 기초작업 시 기초의 크기나 위치 등에 대한 시공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계단 난간은 편측(의릉 경계펜스 반대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의릉 관리의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됨

- 기존 성북구, 동대문구 산책로에 설치된 데크의 디자인과 연속성을 가지도록 재료와 색채 선저을 고려할 것
- 야간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명시설을 도입하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을 적정하게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cctv의 필요성을 검토할 것

(2) 현지조사의견(‘21.4.23. / 문화재전문위원 ○○○)

- 해당 사업은 의릉 문화재지정구역 남서측의 동대문구 들레길과 성북구 들레길을 연결하기 위해 산책로(약110m)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이 지역의 지표는 침식에 취약한 마사토(화강암, 풍화토)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의 주변지형 보호와 함께 집중호우 시 토사유실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
- 따라서 기존 들레길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연 생태계와 원식생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 하는 계획으로 제출받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현지조사 의견과 같이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5명 / 조건부 가결 15명

2. 덕수궁 미술관 전기실 신설에 따른 터파기 공사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덕수궁」 내 미술관 전기실 신설을 위한 터파기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덕수궁 미술관(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 전기는 덕수궁관리소와 통합운영해 왔으나,
- 덕수궁 복원계획 추진에 따라 미술관 내 별도 전기실 신설이 불가피함에 따라 한전 개폐기에서 전기실까지 터파기 공사가 필요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덕수궁(사적 / 1963.01.18.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3) 신청내용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9
 - 사업내용
 - 미술관 전기실 특고압 전기공급을 위해 한전 개폐기에서 전기실 장비반입구까지 25m 터파기 및 전기 배관 매입
- (4) 신청인 의견
 - 문화재청의 덕수궁 미술관 변전설비 이전 조치 요청에 협조하는 사항임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터파기 시 관계전문가 입회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5명 / 조건부 가결 15명

3. 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원남동)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종묘」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현상 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재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적 「종묘」 허용기준 2구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년 8차 소위원회('20.8.12.) 부결(문화재 역사환경 저해 우려)
- '20년 9차 소위원회('20.11.25.) 부결(문화재 역사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종묘(사적 / 1963.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훈정동 1번지
- (3) 신청내용<종묘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위치 : 종로구 원남동 220 외 2필지(2구역, 문화재보호구역에서 46m이격)
 - 사업내용
 - 용도 : 제2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소)
 - 지역지구 :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조 / 지상4층
 - 연면적 : 568.99㎡(용적률237.61%)
 - 최고높이 : 13.05m (2구역 허용기준: 평지붕 8m, 경사지붕 11m이하)
 - 외장재 : 포천석 + 평지붕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 의견('20. 8월 / 문화재전문위원 ○○○)
 - 종묘 동측 46m 이격된 지점에 허용기준 최고높이 8m를 초과하여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신청지역은 2구역으로 허용기준은 평지붕 8m

이하로, 세계문화유산인 종묘의 경관 관리에 영향이 클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5명 / 부결 15명

4.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김포 장릉」 주변 공동주택단지 조성을 위하여 행위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장릉 주변에 공동주택 단지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20~'21년 5차례 부결 :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 1970.05.26.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
- (3) 신청내용<공동주택단지 조성>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현 김포공원묘지){문화재 구역으로부터 30m 이격/2구역(평8m, 경12m), 3구역(평14m, 경18m)}
 - 사업내용

사업내용	1차 (‘20.8.26)	2차 (‘20.9.23.)	3차 (‘20.12.23.)	4차 (‘21.3.24.)	5차 (‘21.4.28)	6차 (금회신청)	비고
대지면적	86,517.20㎡	좌동	좌동	84,700㎡	85,004㎡	84,666㎡	
연면적	288,389.85㎡	288,831.36㎡	262,711.1㎡	264,248.95㎡	264,975.66㎡	259,711㎡	
용적률	(1단지) 229.72%	(1단지) 229.72%	(1단지) 190.80%	(1단지) 215.24%	(1단지) 215.41%	(1단지) 213.73%	
	(2단지) 229.64%	(2단지) 229.70%	(2단지) 227.12%	(2단지) 215.76%	(2단지) 215.76%	(2단지) 214.50%	
	(3단지) 229.64%	(3단지) 229.70%	(3단지) 227.12%	(3단지) 215.76%	(3단지) 215.76%	(3단지) 214.50%	
최고높이	(1단지) 70.8m	(1단지) 68.0m	(1단지) 68.4m	(1단지) 54.3m~45.9m	(1단지) 54.3m~45.9	(1단지) 51.5m~45.9	
	(2단지) 70.9m	(2단지) 70.9m	(2단지) 68.4m	(2단지) 54.3m~51.5m	(2단지) 54.3m~51.5m	(2단지) 51.5m~51.5m	
	(3단지) 70.9m	(3단지) 70.9m	(3단지) 68.4m	(3단지) 54.3m~51.5m	(3단지) 54.3m~51.5m	(3단지) 51.5m~51.5m	
세대수	1,815세대	1,814세대	1,640세대	1,609세대	1,617세대	1,534세대	
결 과	부결	부결	부결	부결	부결		

※ 지구단위계획 상세현황(131,259㎡)

- 주거용지 : 84,666㎡(1단지 41,059㎡, 2단지 43,607㎡)
- 도시기반시설용지 46,593㎡(공원11,885㎡, 소공원2,759㎡, 주차장788㎡, 완충녹지2,617㎡, 도로 28,544㎡)

(4) 신청인 의견

- 김포 장릉 주변의 슬럼화된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문화재와 지역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문화재 경관과 어울리도록 층수 및 디자인 등을 보완하여 신청하였으며 신청안과 관련되어 위원회에서 보완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충실히 따르도록 하겠음.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21.5.14./문화재위원 ○○○)

- 문화재와 사업부지의 조망관계는 입·단면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영향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 획일적인 배치보다는 역사문화환경보호를 위해 배치의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21.2.8./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김포 장릉에서 남동측으로 문화재와 30m이격된 2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12m)과 3구역(평지붕14m, 경사지붕 18m)에 걸쳐 지하2층~지상18층, 최고높이:54.3m의 아파트 29동, 어린이집 2동 등의 공동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존 공동묘지를 이장하고 지형의 변화를 최소화 하여 건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능 문화재 경관의 기준이 되는 장릉의 혼유석에서 볼 때, 수목선 이하로 건축되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3) 현지조사의견('20.08.24./문화재전문위원 ○○○)

- 장릉과 김포 공원묘지 사이에는 장릉공단이 위치하며, 동사업은 도시계획 변경(묘지→2종일반주거) 사항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추진하고 있음.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 제49조 / 시행령 제42조의 3)에서 문화재 보호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보존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 대상지는 북정미산(해발 80m)의 서측 사면에 조성된 공원묘지를 공원묘지보다 지반이 높은 곳으로 현재 허용기준(평지붕 14m / 경사지붕 18m)을 초과하며 절토(약 13m) 등의 형질변경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역사문화환경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5명 / 부결 15명

5. 율곡로 창경궁 앞 도로구조개선공사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경궁」 앞 율곡로 도로구조개선공사와 관련 행위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의 복원 담장, 복신문 및 협문 설치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경궁(사적 / 1963.1.18. 지정)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훈정동 1-2번지
- (3) 신청내용<담장, 복신문, 협문 및 배수로 설치 등>
 - 위치 : 서울시 종로구 권농동 8~원남동 166
 - 사업내용 : 율곡로 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공사 담장길이 등 변경
 - 신청내용
 - 복원 담장 길이 변경 및 협문 설치 개소 변경
 - 변경전 : 담장 길이 503m*높이 2.7m, 복신문 1개소
 - 변경후 : 담장 길이 536m*높이 2.7m, 복신문 1개소, 협문 2개소
 - 담장, 협문 기초 변경
 - 변경전 : 관측다짐(담장기초), 강회잡석다짐(협문), 독립기초
 - 변경후 : 철근콘크리트로 기초
 - 복신문 높이 축소(454mm)
 - 협문 2개소 설치 : 기존 궁궐 협문 형태
 - 담장과 하단 배수로 중간지점에 우수 배제시설 설치
 - 배수로 길이 약250m(φ400mm), 집수정 900*900*18개
- (4) 신청인 의견
 - 원남동 교차로 주변 창경궁 담장의 균열 등으로 추가적인 보수 정비 필요
 - 사업지는 성토지반으로, 안전이 우려되어 철근콘크리트 기초 반영 필요
 - 3차 기술자문 의견을 반영, 복신문 높이 축소
 - 산책로 이용자의 통행 유도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협문 설치
 - 집중호우 대비 현장 내 배수로 및 집수정 설치

라. 참고사항

(1) 자문회의 의견(1차/'20.4.2./문화재위원 ○○○, ○○○, ○○○)

- 성토부분의 안정을 최대한으로 유지하도록 한후 담장공사를 실시함
- 성토부분인 터널아치의 골짜기 부분의 토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2) 자문회의 의견(2차/'20.6.4./문화재위원 ○○○, ○○○, ○○○)

- 20m 이상의 담장은 적절히 끊어서 균열발생을 최소화한다.
- 기초부는 성토부의 지반변형을 고려하여 불연속면을 갖도록 한다.
- 기존 담장을 참고하여 담장의 형태, 사고석 크기, 쌓기법 등을 제시함

(3) 자문회의 의견(3차/'20.8.11./문화재위원 ○○○, ○○○, ○○○)

- 담장 기초 철근콘크리트 및 잡석다짐 하부 성토지역의 지지력을 확인하여 구조적 안전 여부 확인 필요
- 기초 콘크리트 판을 적절히 끊어서 예상할 수 있는 지반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함
- 배수로 뚜껑은 고궁의 경관에 맞는 재료로 시공함이 좋겠음
- 복신문 높이는 너무 높아 보이므로 타지역 문과 비교, 고증 등 재검토함

(4) 현지조사 의견('21.5.21./문화재위원 ○○○, ○○○)

- 전체적으로 문헌고증과 현지발굴을 통하여 원래의 경관을 찾아가면서 복원작업에 임하고 있다고 평가함
- 담장의 길이, 기초, 폭 쌓기 방식은 변경허가 신청한 바와 같이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담장 주변 원지형 복원은 중요하나 종묘와의 지형적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복신문은 변경허가 신청한 바와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겠음.
- 협문의 형태는 기존의 궁궐 협문 양식을 따르는 것이 좋겠음. 단, 협문의 설치와 관련된 담장의 크기 및 형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우수배제 시설은 신청한 바와 같이 설계하는 것이 좋겠음. 다만 이 지역에서 순간 최대 강우 시에 생기는 우수량을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크기인 것인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보류 14명

6. 경복궁 내 2021년 새활용 의류전 장소사용

가. 제안사항

2021 P4G 서울 정상회의의 부대행사인 ‘2021년 새활용 의류전’ 개최를 위한 경복궁 장소사용 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한국 문화에 미래가치를 담은 ‘새활용’을 접목한 새활용 의류전을 한국문화의 상징인 경복궁에서 진행하여 새활용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로 활용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복궁(사적 / 1963.1.21.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161
- (3) 신청내용
 - 촬영명: 2021년 새활용 패션쇼
 - 일시: 2021. 5. 31. (월) 19:30 ~ 20:30
 - * 설치 및 철거 2021. 5. 29. (토) 06:00 ~ 6. 1. (화) 10:00
 - 장소: 경복궁 경회루 및 수정전 일원(야외)
 - 장비: 조명, 스피커, 카메라, 지미집, 레이저, 수상무대 등
 - 사업내용
 - ① (새활용 제품 전시) 다양한 폐자원으로 제작한 제품 전시(20개사 내외)
 - ② (패션쇼) 새활용제품 착용 런웨이
 - ③ (사전공연) 이날치 밴드가 새활용 의상 착용 후 라이브 공연(2~3곡)
 - 우리 전통가락에 퓨전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제작한 빠른 박자의 민요(범내려 온다 등)를 공연하면서 한국의 흥을 소개하면서 분위기 제고
 - 참석자 및 인력현황

- (참석자) 주한대사 배우자, 새활용 기업대표, 환경운동가, 청년 서포터즈, 기자단, 환경부 및 스텝 등 150명 이내

- 사업방식: 대행업체 용역 추진

(4) 신청인 의견

- “해당없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안전점검 철저 및 경북공관리소 검토의견에 따라 추진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조건부 가결 14명

7. 송례문 주변 「제1회 송례문화예술제」 장소사용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국보 「송례문」 주변 「제1회 송례문화예술제」 시행을 위한 ‘대한불교조계종용수선원’의 장소사용 허가신청 건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과 특히 침체된 경제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대문시장 소상공인을 ‘송례문화예술제’를 통해 위로하고자 함
- 문화재청장 비서실 서신민원신청(5.10.)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송례문(국보 / 1962.12.20.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40
- (3) 신청내용
 - 행사명 : 제1회 송례문화예술제
 - 주최/주관 : 송례문화예술제위원회
 - 행사장소 : 송례문 광장
 - 행사일시 및 내용
 - 일 시 : 2021. 6. 12.(토) ~ 6. 13.(일)
 - 주요내용

행사	순서	날 짜	시 간	내 용	비고
다례제	반입	6.12.(토)	09:00~11:00	제단, 무대, 음향, 부채전 부스 설치	
	본행사	6.12.(토)	11:00~12:00	다례, 천고, 헌악, 헌무, 검무	12:00~13:00 차 제공(100명)
	철수	6.12.(토)	13:00~15:00	제단 및 무대 철수	
단오 부채전	개막식	6.13(토)	14:00~14:20	인사말, 전시작품 및 작가 소개, 축사	
	전시	6.12.(토) 6.13.(일)	10:00~17:30	총 20점(작가 10명*2점) 전시	9:30부채반입
	철수	6.13.(일)	17:30~18:30	부채전 부스 철수 및 뒷정리	

- 참여인원 : 50명(안전요원 10명, 출연자 14명, 참석자 26명)
- 설치장비 : 제단(듀라테이블), 향, 초, 찻잔, 돛자리, 광목천(무대용), 의자 20개, 음향(5kw앰프1개, 스피커2개), 부채전시용간이판넬 10개(W1000*H1700)

(4) 신청인 의견 : 없음

라. 참고사항

- 붙임 참고

마. 의결사항

- 부결
 - 장소와 행사 내용이 부적합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4명 / 부결 14명

송례문 종교행사 장소사용 관련 민원 보고

□ 민원개요

- 민원인 : 김홍기(동방예의지국정신선양송례문복원기도단체연합회)
- 접수일시 : 2016. 5. 31(화)/전화문의
- 민원내용 : ‘동방예의지국 송례정신 국민대천례*’ 송례문 장소사용

< 행사 개요 >

- ◇ 준비위원장 : 前 국회의원 황학수
- ◇ 예천봉행예불위원장 : 우룡스님
- ◇ 일시/장소 : 2016. 6. 9(목), 13:00~16:00 / 송례문 광장 일원
- ◇ 주 제 : 정신문화통일기원 희망 “한이름”

□ 민원경위

- ‘16. 5.31 : 송례문 장소사용 가능여부 민원인 전화문의(송례문 관람규정에 따른 장소사용 신청절차 및 종교행사 개최불가 안내)
- ‘16. 6. 1 : 해당 단체 국회의원 박주선 의원실에 민원제기(기획재정담당관실 확인·통보)
- ‘16. 6. 1 : 송례문 장소사용 허가절차 및 민원발생 경위 등 안내·설명(박주선 의원실 보좌관 김중환)
- ‘16. 6. 2 : 국회의원 염동열 의원실에 송례문 장소사용 재차 민원제기(행사 관계자 송례문 방문면담 요청)

□ 검토의견

- 본 행사는 송례문 관리구역 외곽(수선전도 광장)에서 ‘09년부터 매년 개최된 종교행사로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우려
- 「서울 송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종교행사 송례문 관리구역 내 개최 불가

< 관련 규정 >

- ◇ 서울 송례문 관람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378호, '15.10.26)
- (제5조제1항제5호) 음주, 복장, 무속행위, 방언(放言), **개별 제사행위, 종교 집회**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자 관람 중지

□ 향후계획

- 송례문 인근에서의 행사 강행에 대비하여 모니터링 및 경계근무 강화







8. 창덕궁 내 KBS 드라마 「연모」 촬영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창덕궁」 내 KBS 드라마 「연모」의 촬영을 위한 '㈜이야기사냥꾼'의 촬영 신청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내에서 '㈜이야기사냥꾼'의 KBS 드라마 「연모」 촬영을 위하여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 1963.01.18. 지정)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99
- (3) 신청내용
 - 촬영명: KBS드라마 「연모」
 - 일 시: 2021. 7. 5.(월), 7. 26.(월) *휴궁일(월) 09:00~18:00
 - 장 소: 창덕궁 인정전, 희정당, 성정각, 숙장문, 성정문, 관물헌 주변 등
 - 인 원: 총80여명(출연자 40명, 스태프 40명)
 - 장 비: 카메라 및 모니터 세트, 조명 및 녹음장비, 장비(펜더, 달리, 지미짚 등)
 - 사업내용
- (4) 신청인 의견
 - 해당없음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촬영은 최소화하고 창덕궁관리소 지도에 따라 진행할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1명, 제척 1명

【 검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1-05-009

1. 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 검토

가. 제안사항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을 다음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부의안전 조정)에 따라 동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에 관한 안전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행하고자 함

※ 과거 ‘공능활용심의위원회’ 심의 현황(2010~2021)

심의접수 건수	허가	불허가	심의반려	민원취소	비고
268건	181건	72건	12건	3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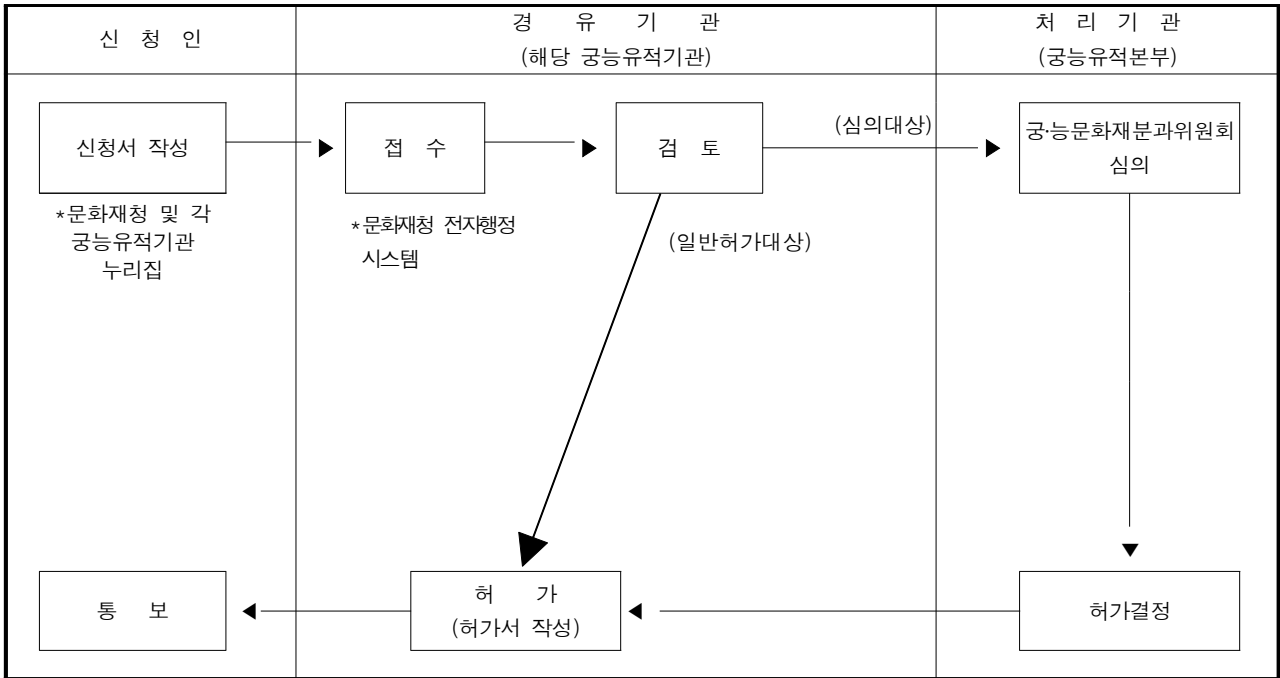
※ 관련근거 :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부의안전 조정)

- 분과위원장은 안전이 과다하여 정상적 심의 곤란시 해당분과 간사에게 중요도에 따라 안전 부의 조정 요청
- 간사는 상기 요청이 있을 경우 안전 부의 기준을 마련하여 분과위원회 검토를 부의, 안전 조정 시행

다. 주요내용

- 과거 운영한 「공능활용심의위원회」 과 동일한 심의사항, 보고사항, 일반 허가대상 (자체검토 처리)으로 구분
- 다만,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하여 심의기준을 과거 ‘공능활용심의위원회’의 기준보다 완화

라. 추진절차



마. 기대효과

- 과도한 위원회 안건 상정을 예방하고, 각 공능유적기관의 자체 검토를 통한 책임행정 실현
- 자체검토를 통한 허가기간 단축을 통한 대국민서비스 기능 강화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조건부 가결 12명

공·능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관련 안전부의 기준

2021. 0. 0. 제1차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제 1 조(목적) 이 기준은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공능에서의 촬영·장소사용 허가에 관련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안전 구분) ① 공능유적본부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안전을 심의사항,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부의한다.

② 안전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심의사항 : 별표1에 따른 심의대상 촬영허가 및 장소사용 신청 사항

2. 보고사항 : 심의대상을 제외한 아래 각 목에 해당되는 사항

가. 문화재청장 또는 공능유적본부장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관한 사항

나. 연도별로 수립하는 공능 활용사업에 관한 종합 계획

다.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사항, 다만 야간의 촬영 및 장소사용의 경우는 심의사항으로 본다.

③ 제2조제2항제2호의 보고사항은 다음 차시 위원회에 사후보고 할 수 있다.

④ 보고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 ①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는 「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4조에서 정한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 심의대상 신청에 관한 사항

2. 촬영 및 장소사용허가 사무와 관련된 주요 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능유적본부장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친 사항

제4조(허가) ① 공능유적기관의 장은 「공·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부의한 안전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장소 및 촬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촬영 및 장소사용 허가 건의 경우(이하 “일반허가 대상” 이라 한다.)는 「공·능 관람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자체검토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2021. 5. 27.>

이 기준은 2021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궁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구 분	심 의 대 상
촬영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다.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촬영 * 야간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촬영 포함 4.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사용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장소사용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 나. 관람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다.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장소사용 * 야간의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주요 장소사용 포함 4.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촬영허가 가이드라인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촬영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역사적 사실 촬영의 경우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4. 작품 당 공능유적기관별 촬영 일수는 월 3일만 촬영 할 수 있다. 5. TV드라마, 극영화, 광고영화 등 상업용 촬영 중 관람환경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촬영은 휴관일 촬영을 원칙으로 한다. 6. 촬영의 세부사항은 공능유적기관과 협의하고,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7. 촬영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촬영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8. 허가조건 준수 등 확인·감독과 모니터링을 위하여 공능유적기관 관계자가 촬영에 동반할 수 있다. 9.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1. 신청자(사업자)는 촬영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2.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장비 및 소품	13. 박석(薄石: 평평한 돌)·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건물 내부에는 발전차, 크레인 등 대형 촬영 장비를 반입 할 수 없다. 14. 장비 및 소품은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떨어져 설치 및 보관하여야 한다. 15. 박석(薄石: 평평한 돌)·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에 촬영을 위한 장비를 보관할 수 없다. 16.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7. 반입 불가 품목(별도 허가 필요) 가.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장소사용허가 가이드라인

구분	세 부 내 용	비고
기본 방침	1.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역사성과 존엄성을 저해하거나 훼손, 왜곡하는 내용이 아니어야 한다. 2.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은 해당 문화재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내용	3. 역사적 재현행사는 고증자료를 제출하여야하며 고증 미비의 경우 불허 할 수 있다	
관리	4.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화재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신청자(사업자)는 관람객의 관람에 불편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6. 신청자(사업자)는 장소사용 시 질서 및 주변 청결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신청자(사업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에서 실시하는 모니터링에 협조하여야 한다. 8. 공능유적본부장(공능유적기관의 장)은 1회 이상 실시한 장소사용의 경우 과거 모니터링 결과를 검토한 후 과거 모니터링 결과 허가조건과 상이하거나 공능유적기관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관람객의 민원 제기, 문화재 훼손 등의 이력이 있는 장소사용 건은 불허 할 수 있다. 9. 장소사용허가를 받은 후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협의 없이 무단으로 장소사용을 하지 않거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 향후 장소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0. 장소사용일 3일 전까지 해당 공능유적기관과 신청자(사업자)간 현장에서 업무협의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업무협의 시 다음 사항을 필히 협의하여야 한다. 가. 문화재청 또는 해당 공능유적기관을 피보험인으로 문화재 안전과 관람객 안전 등을 위한 보험을 가입하고 장소사용일 1일 전까지 보험 청약서 사본을 해당 공능유적기관으로 제출 나. 화재·압사 등 사고발생을 대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안전요원배치도, 소방차 및 구급차배치도 등 포함) 다. 안전요원은 장소사용 신청 시 면적, 위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능유적기관과의 협의하여 배치 라. 관람객 관람 저해 등에 대한 안내판을 신청자(사업자)가 설치 및 철거(규격 : Y형 배너, 60cm×180cm, 재질 : 페트지) 마. 우천·폭설 등 기상악화 시 대책을 제출 바. 장소사용 허가 시부터 물품 철거 시까지 공능유적기관의 지시사항을 수행할 책임자를 1명 이상 지정 사.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아. 물품 반·출입 및 장소사용을 위한 차량의 출입에 관한사항 자. 기타 문화재의 보존 관리상 필요한 사항	
장비 및 소품	11. 장소사용을 위한 무대는 건물 등 시설물과 1m 이상 간격을 두어 설치하여야 하고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와 박석(薄石: 평평한 돌) 위 설치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12. 월대(月臺: 넓은 기단 형식의 대)와 박석(薄石: 평평한 돌) 등에 무대 등 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때에는 문화재 훼손 방지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공능유적기관의 검토 후 설치해야 한다. 13. 장소사용을 위한 시설물의 디자인, 소재, 형태 등은 해당 유적의 품격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능유적기관과 사전협의 후 설치해야 한다. 가. 시설물은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하여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디자인해야 한다. 나. 시설물의 구조물 등은 재료를 노출하여서는 안 된다.(무대, 조명탑, 음향부스 등에 풍경과 어울리게 디자인 한 가림막 설치 등) 다. 행사를 위한 천막(텐트)은 캐노피형을 사용해야 한다.(몽골텐트 금지) 14. 조명에서 발생하는 빛과 열은 단청 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시설물에 근접하여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15. 행사 관련 자재반입 및 반출은 관람시간 전 또는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반입 불가 품목(별도 허가 필요) 가. 화재 및 폭발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사적지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소품 및 물품 다. 허가받지 않은 차량과 촬영 소품용 차우마차·마필 및 기타 동물 등	

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 대상 신규대조표

구분	과거(공능활용심의위원회)	수정(공능문화재분과위원회)
촬영	1. 상업용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촬영 나.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 에서의 촬영 라.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마. 발전차 또는 크레인 등 대형장비 반입이 필요한 촬영 2.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촬영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에서의 촬영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촬영 3. 동영상 촬영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 하는 촬영 가. 촬영을 위해 입장하는 인원이 60명 이상일 경우의 촬영 나. 크레인(20톤 초과) 등 대형장비(발전차는 제외) 반입이 필요한 촬영 다.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촬영 4.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촬영
장소 사용	1. 두 개 이상의 공능유적기관에서의 장소사용 2. 건물내부 가. 전각마케팅 대상 외 전각의 내부 장소사용 3. 건물외부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 하는 장소사용 가.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나. 비공개일 및 공개 제한시간 중의 장소사용 다. 국보 및 보물인 전각 일원 에서의 장소사용 4.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1. 국보 및 보물인 전각 내부 에서의 장소사용 2. 공개 제한지역에서의 장소사용 3. 장소사용 중 다음 각 호 중 두 개 이상에 해당하는 장소사용 가. 공연을 목적으로 한 100㎡ 이상의 무대설치 나. 관람객 150석 이상 규모의 행사 다. 야간(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장소사용 4. 공능유적기관의 장이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해 심의 요청한 장소사용

※ 참고

- 최근 5년치(심의건) 무대면적 : 100㎡ 이하(57.1%), 100㎡ 초과(42.9%)
- 최근 5년치(심의건) 무대면적 당 참가 인원 : 3.3㎡당 5~10명
 * 100㎡ 기준 : 150명(5명) ~ 300명(10명)
- 크레인은 중형 크레인 기준인 20톤 부터, 촬영시 발전차는 대부분 동반하므로 제외

【 보고사항 】

안전번호 공능 2021-05-010

1.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제안사항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사적 「남양주 광릉」 주변 봉선사 제1교(세월교) 확장 공사를 위한 행위 변경 허가신청 등 2건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남양주 광릉	경기도 남양주시	○○○	<봉선사 제1교(세월교) 확장공사>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31 (1구역/문화재구역과 176m 이격) ○ 사업내용 - 봉선사 제1교(세월교) 보행로 확장	허가	'21.5.12.
사적 여주 영릉과 영릉	경기도 여주시	○○○	<근린생활부지 조성 및 창고시설 증축> ○ 위치 : 경기도 여주시 능서면 번도리899-23,24 (4구역/문화재구역과 453m이격) ○ 사업내용 - 근린생활부지 조성: 868㎡ - 창고시설 증축: 98.43㎡, 최고높이 5.2m	허가	'21.5.20.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 원안접수 12명